

『 파주시 대원리 101-3 슬레이트 해체공사 』

(작업 중)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2026. 02. 09~11(3일간)

# 목 차

I.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II.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별첨1. 측정결과

별첨2. 측정 지점 위치도

별첨3. 측정 지점 비산측정사진

별첨4. 석면조사기관 지정서(사본)

#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## 1. 작업장 개요

(석면해체·제거업자)	현장명(공사명·작업명)	파주시 대원리 101-3 슬레이트 해체공사	
	현장 소재지	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독방길 295-27(대원리 101-3외 5필지)	
	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번호	고양-20252537	업자명(상호) (주)새움
	전화번호	032-561-4221	대표자 박 인 자

## 2. 측정기간 - 2026 년 02 월 09~11 일(3 일간)

## 3. 측정자 (분석자 포함)

성명	자격종목 및 등급	자격등록번호	비고
김갑석	대기환경기사	89201050071L	측정자
위은경	환경 전공		분석자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2026 년 02 월 12 일

한국환경연구원(주) 대표



첨부서류

첨부1. 측정결과  
첨부2. 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  
첨부3. 측정 지점 비산측정사진

### <별첨1> 측정결과

- 측정장소 :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독방길 295-27(대원리 101-3외 5필지)
- 측정기간 : 2026 년 02 월 09~11 일(3 일간)
- 석면건축자재 및 함유면적

석면함유물질위치			석면함유물질종류	석면함유면적(m <sup>2</sup> )
지상 1층	지붕	지붕재	슬레이트(백석면 13%)	785.55
<b>합 계</b>				<b>785.55</b>

- 측정결과표

- 측정일: 2026 년 02 월 09 일 (공사 개시 전)

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 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시야 수	측정 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 의 종류
#1	부지경계선 1	LX40A (1)	9.7	100	2026.02.09	0.001	-
#2	부지경계선 2	LX40A (1)	9.6	100		0.001	-
#3	부지경계선 3	LX40A (1)	9.7	100		0.001	-
#4	부지경계선 4	LX40A (1)	9.8	100		0.001	-

- 측정일: 2026 년 02 월 10 일


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 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시야 수	측정 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 의 종류	
#1	부지경계선 1	LX40A (1)	9.6	100	2026.02.10	0.001	-	
#2	부지경계선 2	LX40A (1)	9.4	100		0.001	-	
#3	부지경계선 3	LX40A (1)	9.7	100		0.001	-	
#4	부지경계선 4	LX40A (1)	9.6	100		0.001	-	
#5	지상 1층	작업장 주변(실외)	LX40A (1)	9.5		100	0.001	-
#6		위생설비 지점	LX40A (1)	9.8		300	0.001	-
#7		폐기물 보관지점	LX40A (1)	9.6		300	0.001	-
#8		폐기물 보관지점	LX40A (1)	9.6		300	0.002	-

- 측정일: 2026 년 02 월 11 일

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 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시야 수	측정 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 의 종류	
#1	지상 1층	폐기물 보관지점	LX40A (1)	9.7	300	2026.02.11	0.001	-
#2		폐기물 보관지점	LX40A (1)	9.5	300		0.002	-

<별첨2> 측정 지점 위치도(02/09)

부지경계선지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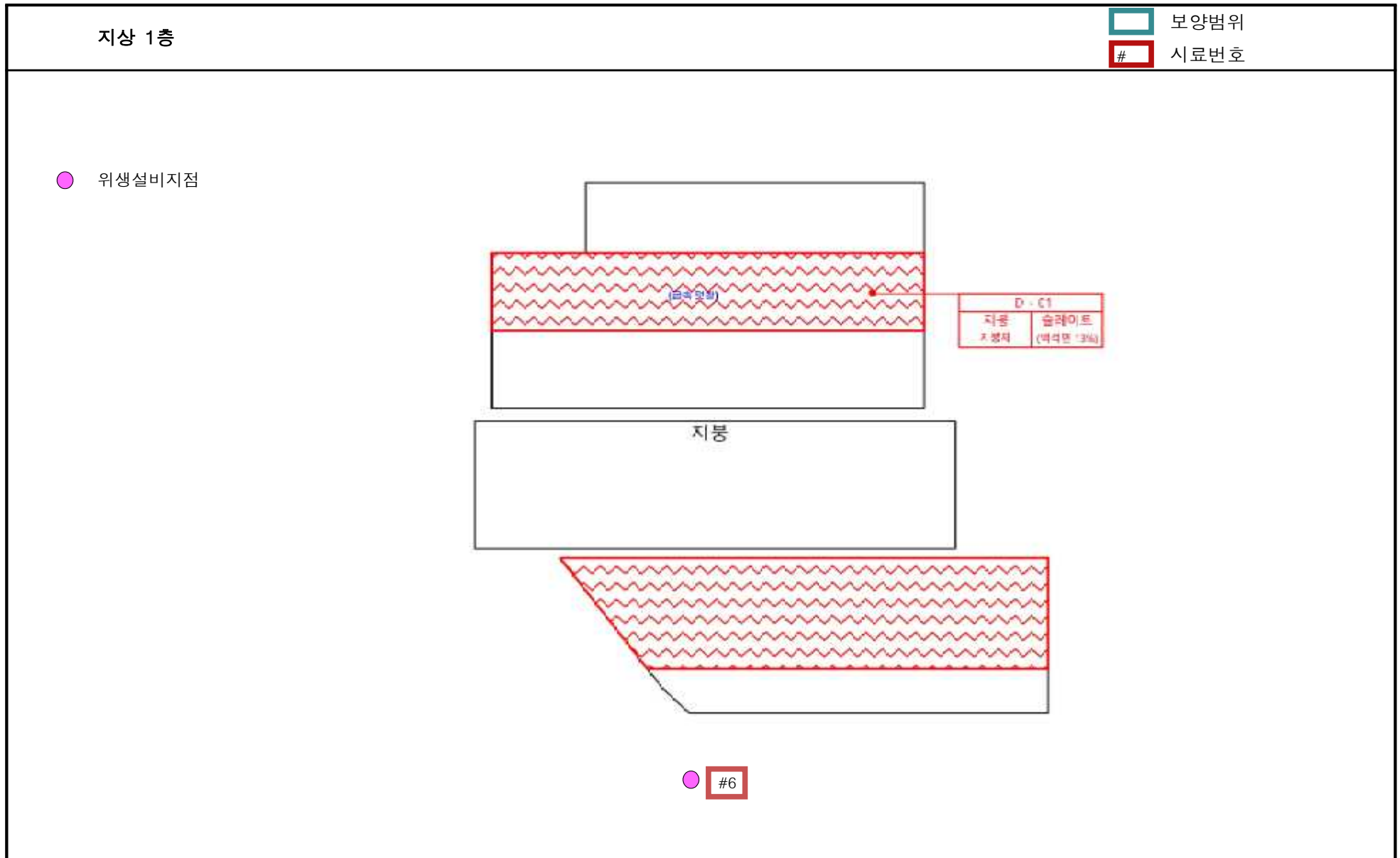
 측정위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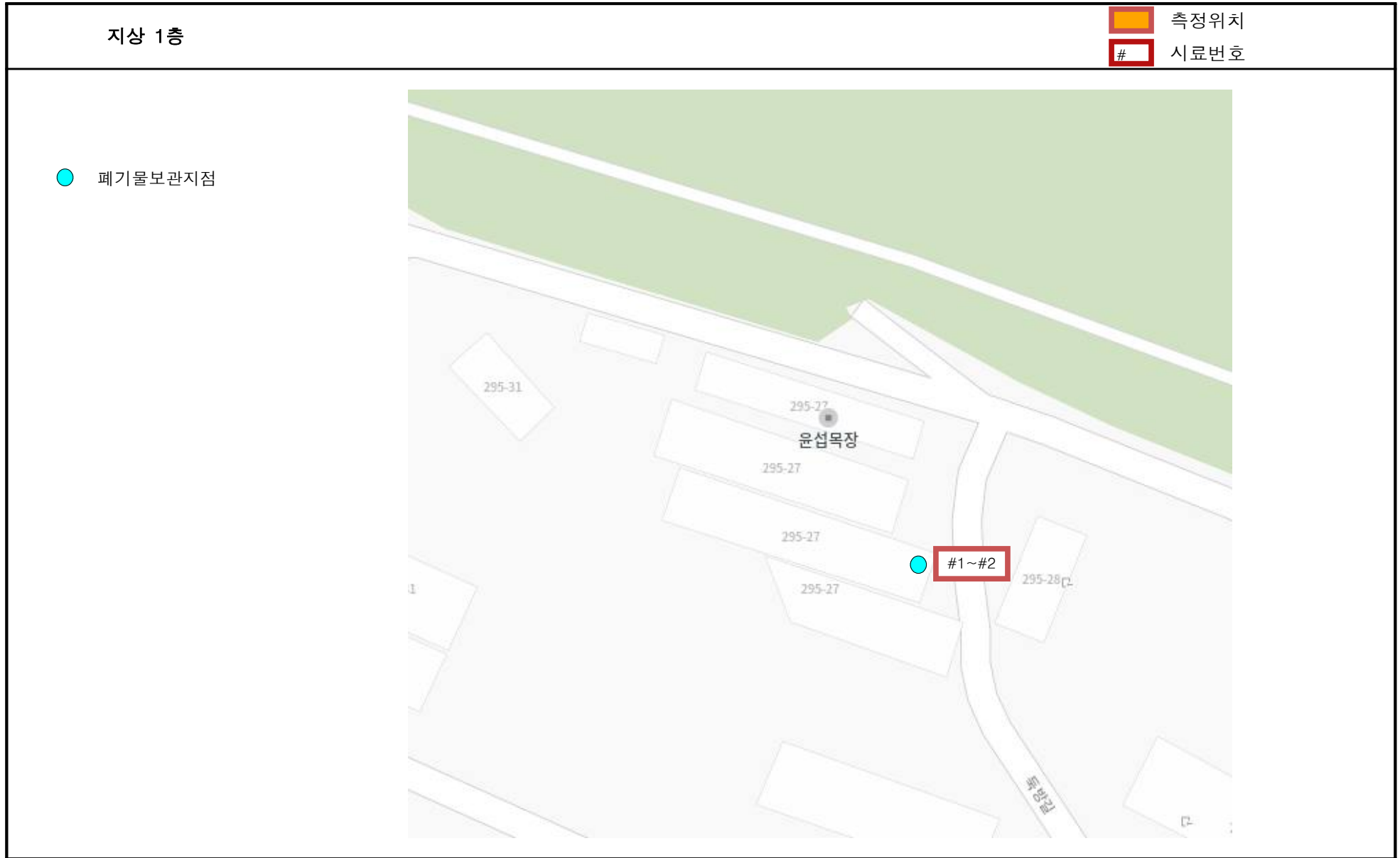
<별첨2> 측정 지점 위치도(02/10)











<별첨2> 측정 지점 위치도(02/10)



<별첨2> 측정 지점 위치도(02/11)









<별첨3> 측정 지점 비산측정사진(02/09)

측정지점	비산측정 시작 사진	비산측정 종료 사진	비고
부지 경계선 1			
측정 시작 시간: 10:10		측정 종료 시간: 14:30	
부지 경계선 2			
측정 시작 시간: 10:15		측정 종료 시간: 14:35	
부지 경계선 3			
측정 시작 시간: 10:20		측정 종료 시간: 14:40	
부지 경계선 4			
측정 시작 시간: 10:25		측정 종료 시간: 14:45	

<별첨3> 측정 지점 비산측정사진(02/10)

측정지점	비산측정 시작 사진	비산측정 종료 사진	비고
부지 경계선 1	 <p>측정 시작 시간: 11:20</p>	 <p>측정 종료 시간: 15:40</p>	
부지 경계선 2	 <p>측정 시작 시간: 11:25</p>	 <p>측정 종료 시간: 15:45</p>	
부지 경계선 3	 <p>측정 시작 시간: 11:30</p>	 <p>측정 종료 시간: 15:50</p>	
부지 경계선 4	 <p>측정 시작 시간 11:35</p>	 <p>측정 종료 시간: 15:55</p>	

측정지점	비산측정 시작 사진	비산측정 종료 사진	비고
작업장 주변 (실외)	 <p>측정 시작 시간: 11:40</p>	 <p>측정 종료 시간: 13:50</p>	
위생설비 지점	 <p>측정 시작 시간: 11:45</p>	 <p>측정 종료 시간: 12:30</p>	
폐기물 보관지점	 <p>측정 시작 시간: 16:05</p>	 <p>측정 종료 시간: 16:50</p>	

<별첨3> 측정 지점 비산측정사진(02/11)

측정지점	비산측정 시작 사진	비산측정 종료 사진	비고
폐기물 보관지점	 <p>측정 시작 시간: 07:40</p>	 <p>측정 종료 시간: 08:25</p>	

## 석면해체·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비산 측정결과 요약

한국환경연구원(주)소속의 석면비산농도 측정자는 2026년 02월 09~11일(3일간)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독방길 295-27(대원리 101-3외 5필지) 일대의 파주시 대원리 101-3 슬레이트 해체공사 관련하여 작업 중 작업장 주변에서 지역시료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여과지(Mixed Cellulose Ester membrane)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였다.

[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] 제38조에 따라 환경부 고시 제2020-267호에 명시된 비산농도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부지경계선 및 위생설비 입구에서는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바닥으로부터 약 1.2m~1.5m 높이에서 음압기 공기 배출구지점은 공기 배출구에서 0.3m~1m이내의 지점에서 채취하였으며 약 9L/min의 공기 유량으로 각 시료채취 매체 당 400~2,400L 공기를 채취하였다.

분석결과 비산 발생 가능한 측정지점 모두 사업장주변의 배출허용기준 [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] 0.01개/cm<sup>3</sup> 미만으로 확인되었다.

NO	측정일	측정지점	시료채취 지점수		시료측정위치	비고
1	02월 9일	부지경계선	4	4	작업장 건물 주변	별첨1, 별첨2, 별첨3 참고
2	02월 10일	부지경계선	4	8	작업장 건물 주변	
		작업장 주변(실외)	1		지상 1층	
		위생설비 지점	1			
		폐기물 보관지점	2			
3	02월 11일	폐기물 보관지점	2	2	지상 1층	

<별첨4> 석면조사기관 지정서(사본)

제2020-120005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변경)

기관명	한국환경연구원(주)	
소재지	(22671)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80번길 24 (왕길동)(왕길동 113-3)	
대표자성명	김윤희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관할 지역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대행(지정) 지역	

\*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3. 그 밖의 기타사항

\* "지정사항" 및 "준수사항"에는 지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적거나 필요 없는 사항은 삭제합니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120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20. 4. 9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

